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5년 2월 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최근 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고 건강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암 관련 검사항목을 신설하여 구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함

II. 주요골자

- 가. 암표지자검사 수수료 신설 (안 별표 제4호 다항)
- 나. 검사수수료는 건당 9000원으로 정함 (안 별표 제4호 다항)

III. 검토의견

- 첨단기술 변화에 힘입어 의료환경이 나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각종 성인병과 암질환 발병률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암환자 등록건수가 약 2배로 증가(한국 중앙암등록본부 자료)하였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기준 우리나라 총 사망자 246,515명 가운데 25.5%인 62,887명이 암으로 사망하여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암질환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대부분 완치될 수 있음에도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적 이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등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이번 우리구 보건소에서 암 관련 검사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구민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미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 암 조기검진사업은 1999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30%를 대상으로 5대 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 무료검진을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전년 120만명 → 220만명)하고 있음.

- 검사항목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 검토결과, 보건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안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등 진료관리 및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할 수 있고(지역보건법 제9조제13호, 제14호), 시설이용 및 검사·진료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를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14조) 상위법령에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검사수수료를 건당 9천원으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암표지자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금액이나,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검사장비에 적합한 검사시약의 시판금액(별첨 “검사시약 가격표” 참고)을 고려하면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타 자치구 암표지자검사 시행 현황

구 분	검사종목	수수료(원)	시행년도	비 고
구로구	2항목	18,000	1997	
광진구	4항목	25,000	1998	
용산구	4항목	24,000	2004	
서초구	4항목	20,000	2004	
영등포	3항목	6,000	2004	항목당
동작구	5항목	5,000	2002	"

- 참고로 신설되는 “암표지자검사”는 암 발생 여부 진단을 위한 일종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검사방법으로서 검사 자체로는 직접 암 진단을 할 수는 없고 검사후 의심이 가면 보다 정밀한 검사를 통해 확진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암 조기진단을 위해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서 현재 서울시의 6개 보건소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암표지자검사를 할 수 있는 면역혈청분석기를 지난 2004년도에 구매(미국 에버트사 제품)한 바 있고 췌장암, 간암, 대장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5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IV.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 지역보건법(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852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保健所등 地域保健醫療機關의 設置·운영 및 地域保健醫療事業의 連繫性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保健行政을 합리적으로 組織·운영하고, 保健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國民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9條 (保健所の 業務) 保健所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管轄區域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管掌한다.

13. 地域住民에 대한 診療, 健康診斷 및 慢性退行性疾患등의 疾病管理에 관한 사항

14. 保健에 관한 實驗 또는 檢査에 관한 사항

15. 障碍人の 再活事業 기타 保健福祉部令이 정하는 社會福祉事業

16. 기타 地域住民의 保健醫療의 향상·增進 및 이를 위한 研究등에 관한 사업

第14條 (手数料등) ① 保健所는 그 施設을 이용한 者, 實驗 또는 檢査를 의뢰한 者 또는 診療를 받은 者로부터 手数料 또는 診療費를 徵收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数料와 診療費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 암표지자 : 일반적으로 “종양표지자”라고 하며, 암 세포가 증식되어 있는 조직내에서 형성되어 나오는 물질로써 체내에 암이 생기면 건강할 때는 거의 없는 특수단백이나 효소, 호르몬 등이 혈액이나 요중에 증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측정하면 암의 조기발견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암의 존재를 알려주는 지표의 역할을 함.

그러나 종양표지자의 종류는 암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할 뿐아니라 타당한 종양표지자가 없는 암도 많으므로 종양표지자를 측정하여 어느정도 이상이면 의심만 할 뿐이고 검사 자체로 직접 암을 진단하지는 못함. 따라서 종양표지자 검사는 암발생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적 보조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검사방법 임.

암표지자 검사시약 가격표

(단위 : 원)

검 사 시 약 명		금 액 (100회분)	단 가 (1회)	검 사 비 (공통시약비포함)
췌 장 암	액심 CA19-9 리에이전트 (AXSYM CA19-9 Reagent)	528,000	5,870	8,687
	액심 CA19-9 스탠다드 캘리브레이트 (AXSYM CA19-9 standard Calibrator)	100,000	1,100	
	액심 CA19-9 컨트롤 (AXSYM CA19-9 control)	55,000	610	
간 암	액심 AFP 리에이전트 (AXSYM AFP Reagent)	239,000	2,660	5,777
	액심 AFP 스탠다드 캘리브레이트 (AXSYM AFP standard Calibrator)	124,000	1,400	
	액심 AFP 컨트롤 (AXSYM AFP control)	55,000	610	
대 장 암	액심 CEA 리에이전트 (AXSYM CEA Reagent)	375,000	4,170	7,287
	액심 CEA 스탠다드 캘리브레이트 (AXSYM CEA standard Calibrator)	124,000	1,400	
	액심 CEA 컨트롤 (AXSYM CEA control)	55,000	610	
전립선암 (남자)	액심 PSA 리에이전트 (AXSYM PSA Reagent)	440,000	4,900	8,017
	액심 PSA 스탠다드 캘리브레이트 (AXSYM PSA standard Calibrator)	124,000	1,400	
	액심 PSA 컨트롤 (AXSYM PSA control)	55,000	610	
난 소 암 (여자)	액심 CA125 캘리브레이트 (AXSYM CA125 Reagent)	409,000	4,540	7,357
	액심 CA125 스탠다드 캘리브레이트 (AXSYM CA125 standard Calibrator)	100,000	1,100	
	액심 CA125 컨트롤 (AXSYM CA125 control)	55,000	610	
공통시약	액심 MUP(AXSYM MUP)	63,000	5	1,107
	액심 라인 딜류언트 (AXSYM Line Diluent)	74,000	115	
	액심 매트릭스 셀 워시 솔루션 (AXSYM Matrix cell wash solution)	46,500	7	
	액심 매트릭스 셀(AXSYM Matrix cell)	44,000	490	
	액심 리액션 베셀 (AXSYM Reaction vessel)	44,000	490	